

◎방송통신사무소공고 제2024-7호

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01월 15일

방송통신사무소장

**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**

1. 근거법령
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, 제76조(과태료)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
-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, 제15조(송달의 효력발생)

2. 행정처분대상 : 남\*아 등 6건

3. 게재(게시)기간 : 2024. 1. 15. ~ 1. 28.(공고일로부터 14일간)

4. 의견제출기한 : 게재(게시)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

※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.

5. 의견제출장소 :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,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  
(☎ 02-6735-8134, FAX : 02-6735-8144 / E-mail : kdd0260@korea.kr)

**행정처분(예정) 대상자**

번호	대상자	주민등록번호/ 법인등록번호	고지주소	법령 위반사항	과태료 금액(원)	스팸URL 전화번호	광고 내용
1	남*아	871013- 2*****	인천광역시 부평구	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	7,500,000	070-****-2100	통신 기기
2	주*미	840709- 2*****	경기도 부천시	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, 제4항, 제6항	7,500,000	1800-5***	부동산
3	주식회사 와***드	285011- 026****	인천광역시 부평구	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, 제4항	3,750,000	ad***@yd***.com	애완 용품
4	주식회사 **토리	131411- 048****	경기도 안산시	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, 제4항, 제6항	7,500,000	070-****-4817	여론 조사

5	(주)제이 ***퍼니	121111- 043****	경기도 부천시	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, 제4항, 제6항	7,500,000	070-****-3397	통신 가입
6	주식회사 지****스	121111- 042****	경기도 부천시	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, 제4항, 제6항	7,500,000	02-****-5817	여론 조사